

■ 고졸자격검정시험 시행규칙 [별첨 제4호 서식]

고졸자격무시검정정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만 표시를 합니다.

입수번호	입수일자	처리기간	16일
출원인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출원자격			
자격요건	출신학교명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_____전임
	연수명	(성 학)	
	검정	(성 학)	
[()] 졸업 [()] 수료			

『고졸자격검정 시험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졸자격무시검정검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신청인(출원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붙임] 학장·대학·학교장으로부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는 복사한 것만서도 되고 견감검정 결과물로서 2. 『고졸자격검정 시험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출원 또는 수료증 포함으로 하는 서류를 포함함) 나. 검정결과서(검정결과 포함으로 하는 서류를 포함함)	유무 한 문
검정기관 확인 사항	1. [붙임]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소·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법규 결정 2. 『고졸자격검정 시험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조시험허용(보급교사로 한정함) 나. 장조시험허용(장보급교사로 한정함) 다. 국가기술자격증(취학 전까지 취득함)	

행정정보 제공동의서

본인은 이 간 조추천서와 관련하여 「국가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제공이유를 통하여 간조시험허용·장조시험허용·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간조(간조시험허용·장조시험허용, 국가기술자격증의 사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졸자격검정 시험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선별검정 결과제출 동의서

본인은 이 간 조추천서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소·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법규 결정에 동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선별검정 결과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10mm x 297mm [복사기 (80g/㎡) 또는 출력기 (80g/㎡)]

4.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증 관련 안내

가.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해당서류를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여, 자격검정 후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음

나. 해당서류

- 1) 학위증명서 1부: 학생서비스센터 자동발급기 (ECC 지하3층) 또는 인터넷증명 신청
※ 졸업일 이후 발급 가능
- 2) 성적증명서 1부: 학생서비스센터 자동발급기 (ECC 지하3층) 또는 인터넷증명 신청
※ 졸업일 이후 발급 가능
- 3)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미검정 확인서 포함) 1부: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공
※ 신청방법: 이메일로 신청 (gedewha@ewha.ac.kr) 후 졸업일 이후 수령
다음과 같이 메일제목을 설정하여 송부
[예\) 상담심리/212CPE**/김이화/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신청](#)
- 4)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본인 준비
- 5) 경력증명서 1부: 본인 준비
- 6)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본인 준비
※ 시도교육청 안내에 따름